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Policy Measures for Enhancing the Financial Security of Older Persons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인의 삶의 질에 경제적인 측면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노년기에 경험하는 고통중 하나로 빈곤이 언급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전체가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 사회적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규모와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제도의 실효성 또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공·사적 소득보장간의 역할 분담이 미흡하며,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인의 경제상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1. 노인의 경제상황

노인의 경제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전체인구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매우 낮다. 최근 발표된 OECD의 『한 눈에 보는 연금 2009』에 의하면 가처분 가구소득 기준으로 볼 때 OECD 평균 노인의 소득은 전체인구의 82.4%수준이며, 한국노인의 경우 동 비율이 70% 미만으로 회원국 중 아일랜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OECD국가에 비하여 노화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기가 매우 높은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노인층의 열악한 경제상황은 노

인의 계층분포에도 반영되고 있다. 현재 노인층과 비노인층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노인가구의 경우 기초보장수급층이 7.2%로 비노인가구의 2.5%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가구의 법정차상위층의 비율은 17.2%, 소득차상위층의 비율은 15.3%인데 이는 비노인가구의 3.3%와 4.0%에 비하여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경상소득 120% 이상인 비율이 19.4%로 비노인가구의 10.4% 보다 높다.

둘째,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중위 가구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자 비율로 측정되는 상

표 1. 비노인가구와 노인가구의 소득계층별 구성

(단위: 가구)

소득계층	노인가구					비노인가구	합계
	독거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 노인가구	계		
수급	19.1	3.4	2.3	6.1	7.2	2.5	3.8
법정차상위	34.8	17.9	7.3	14.7	17.2	3.3	6.9
소득차상위	12.6	27.9	9.9	18.9	15.3	4.0	7.0
차차상위	18.3	21.6	16.9	25.5	19.4	10.4	12.8
일반	15.2	29.2	63.6	34.9	41.1	79.8	69.5
합계	100.0 (1,468)	100.0 (1,178)	100.0 (42.3)	100.0 (838)	100.0 (6,072)	100.0 (16,839)	100.0 (22,911)

주: 1) 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2) 법정차상위: 수급가구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3) 소득차상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고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4) 차차상위: 가구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상~180% 미만인 가구
 5) 일반: 가구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90% 이상인 가구
 자료: 이현주 외,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2008.

대빈곤의 개념에 기초할 때 한국노인의 45%가 빈곤상태이다. 이는 OECD 평균 13.3%에 비하여 약 32%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한국 다음으로 노인빈곤율이 높은 아일랜드(31%)에 비해서도 14%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이러한 노인빈곤은 노인 중에서도 남성노인에 비하여 여성노인에게서 높으며, 일을 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낮고, 독거노인의 경우가 빈곤경험율이 높아 노인인구 중에서도 빈곤위험이 특히 높은 집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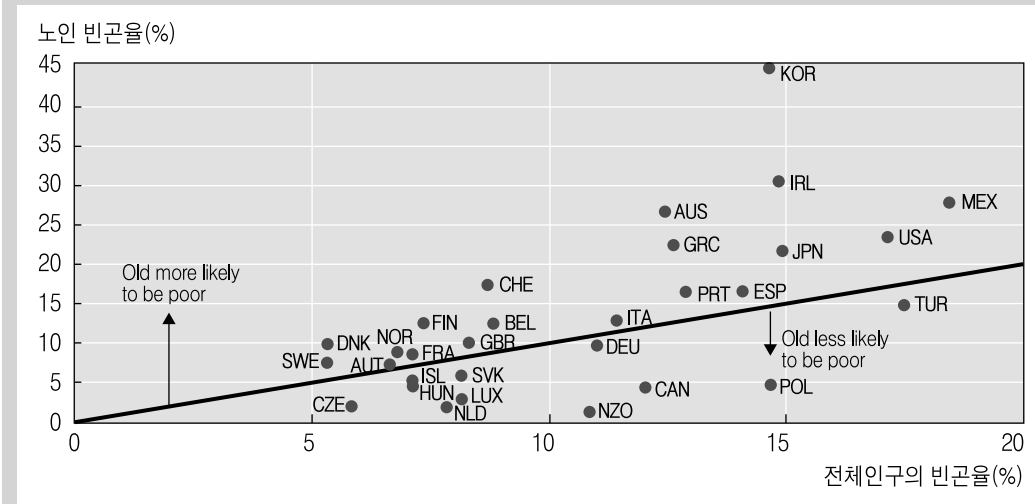
이러한 한국노인의 빈곤율은 전체인구의 빈곤율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전체 인구의 평균 빈곤율은 10.6%인 반면, 노인빈곤율은 13.3%로 약간 높다. 한국의

경우는 분석대상국가 중 전체인구의 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의 차이가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소득의 상대적 수준과 노인 빈곤율에 기초하여 OECD 국가를 분류한 결과 한국은 호주, 아일랜드와 함께 전체소득 대비 소득의 크기가 적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노후소득 고위험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의 국내자료를 활용하여 한국노인의 빈곤실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은 전체가구가 9.40%인데 비하여 노인가구의 경우는 22.75%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빈곤갭비율¹⁾의 경우 전체가구가 1.98%인데 비하여 노인가구는 4.85%로 약 2.5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빈곤갭: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선과 개인(혹은 가구의 소득과의 차이
 빈곤갭 비율: 빈곤선 미만에 있는 사람(혹은 가구를 빈곤선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담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을 의미

그림 1. 노인과 전체인구의 소득빈곤의 관계(2000년대 중반)



자료: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09』, 2009.

한편 상대빈곤개념에 기초할 경우 전체가구의 빈곤율이 20.11%인데 비하여 노인가구는 44.81%로 2배가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빈곤갭 비율의 경우도 전체가구가 6.95%인데 비하여 노인가구는 16.52%이다. 이러한 수치는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약간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노인

가구가 경험하는 빈곤문제는 여전히 크게 남아 있다.

셋째, 노인은 타인의 소득에 의존도가 높다. 노인개인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2%에 불과하며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특히 그 비율이 낮아 20.4%에 불과하다. 또한 개인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전소득의

표 2. 비노인가구와 노인가구의 빈곤지수 비교

(단위: %)

	최저생계비기준(절대빈곤)		중위소득 50% 기준(상대빈곤)	
	빈곤율	빈곤갭비율	빈곤율	빈곤갭비율
전체가구	9.40	1.98	20.11	6.95
노인가구	22.75(15.40)	4.85(2.48)	44.81(40.31)	16.52(12.63)

주: 2007년도 경상소득 기준 분석임.

()안의 수치는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도입 후의 빈곤실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3차조사』, 원자료.

정경희 외,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2009.

비중이 매우 높아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이 38.0%,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이 5.1%이다. 또한 공적연금인 8.1%, 기초노령연금은 20.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6.0%를 차지하고 있어 공적이전소득은 노인개인소득의 34.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근로소득은 5.5%, 사업 및 부업소득은 8.4%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넷째, 노인은 타 연령층과 다른 자산 구성을 갖고 있어, 재산을 소유한 노인의 비율이 높다. 즉, 노인가구의 약 3/2정도가 재산을 갖고 있으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는 노인이 상당 부분 있다²⁾. 이는 노인가구의 경우 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은 없더라도 노인이나 노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보유비율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의 경제생활에 있어 주택, 토지 등 재산의 활용이 실제 가용한 소득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

다 하겠다.

다섯째, 노인의 경우 지출 중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006년도 차상위조사에 의하면 노인가구의 경우 전체 총지출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3%로 4.6%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건의료비가 노인의 생활에 있어 갖는 중요성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노인에게 여유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사용하고 싶은 항목으로 보건의료비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다³⁾. 노년기의 경우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출감소가 노인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건의료비의 감소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표 3. 노인의 소득구성 실태

(단위: %)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공적 연금	기초 노령연금 (경로연금)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개인소득 전체	가구소득 중 개인소득의 비중
		전체	5.5	8.4	8.1	20.3	38.0	5.1	6.0	100.0
성	남자	8.9	16.3	13.9	13.2	26.0	12.0	2.9	100.0	56.3
	여자	3.5	3.8	4.7	24.5	45.0	1.0	7.8	100.0	47.6
가구 형태	노인독신	4.7	6.7	4.6	16.7	42.7	1.7	16.6	100.0	99.4
	노인부부	5.5	11.2	9.5	13.0	42.5	11.6	2.6	100.0	51.9
	자녀동거	5.9	6.4	7.7	30.4	32.2	0.5	1.8	100.0	20.4
	기타	6.2	7.5	12.9	25.0	25.9	1.3	10.0	100.0	34.0

자료: 정경희 외,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2009.

2) 정경희 외, 『기초노령연금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2007.

3) 정경희 외,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2009.

2.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개요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을 1차 안전망으로 깔고, 저소득층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며,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게는 최종 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소득보장제도로써 피용자의 경우 퇴직금이 있으며, 특수직역종사자의 경우 퇴직수당이 연금제도에 있으며, 모든 국민은 자발적인 개인연금 가입을 통하여 추가적 소득보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0여년을 경과하고 있으나, 전가입자의 50% 이상이 1999년 4월 도시지역 확대적용을 통하여 적용되었기 때문에 현재 노인 중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계층은 많지 않

다. 제도적으로 초기가입자를 위하여 특례노령연금을 통하여 5년만 가입하여도 연금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노인은 아직 적은 편이다. 따라서 노인의 약 15%가 공적소득보장제도로부터는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는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3. 정책과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구성요소 각각은 노후소득의 안정성과 포괄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구성요소 중에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현 노인세대의 경제적인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지

속적인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대 노인에게는 즉각적인 영향이 없지만, 미래의 노인이 될 세대의 경제적 안정에 영향을 주는 제도가 있다. 따라서 현 노인의 입장에서 볼 때의 정책적 개선의 시급성과 미래에 노인이 될 청장년층이 보는 정책적 시급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현재 대 노인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과제와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정책과제로 나누어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현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강화 방안

현 노인세대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충분한 경제적 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의 제도 개선과 정책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첫째 현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적용범위가 가장 넓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연금액의 규모가 너무 적어 노인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연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A값)의 5%인 월 8만8천원으로 이는 2009년도 1인 최저생계비인 490,845원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A값의 1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언제 어떻게 급여액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기초

노령연금이 지방재정에 가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관리체계도 보건복지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관리운영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노인들에게 가장 관심있는 것은 급여액의 규모이므로 구체적인 급여액의 인상방안의 구체화가 무엇보다 먼저 요구된다.

그런데 이러한 제 과제의 해결방안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및 재구조화 방안과 맞물려 있음도 사실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도입시부터 상당한 보편성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적 급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별적 공공부조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제도의 성격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개혁위원회」 하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를 논의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소위원회에서는 선별적 공공부조안과 보편적 기초연금안의 두가지 방안에서 복수의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 중이다. 선별적 공공부조안은 노후 빈곤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방안으로 국민연금은 주 소득보장제도로 운영하되, 국민연금에의 접근이 어렵거나 급여수준이 낮아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부조 방식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반면 보편적 기초연금안은 모든 노인에게 1연금을 국가가 담보함으로써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대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권리로서의 기초적인 노후소득보장과 평등에 기초한 사회대감을 강조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발전방안에 대

그림 2. 현행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성

	계층	일반소득계층			저소득층	
		피용자	자영자	공무원, 사학, 군인	차상위 저소득층	빈곤선 이하계층
사적근로, 사적이전소득 등	4층					
추가보장 (사적연금)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금 (기업연금)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 연금		
1차 안전망 (공적연금 등)	1층	국민연금				
최종안전망 (빈곤선)	0층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제도

4)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은 2009년 5월말 기준이며(「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토론회」자료집, 2009), 특수직 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은 2008년 말 기준임(「2009 고령자 통계」, 2009).

한 국민적인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하다. 장기적인 발전방향이 확정되어야만 급여액 조정, 재원부담방안, 관리체계의 개선과 같은 단기적인 제도개선방안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에 있어 의미가 큰 기초보장제도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기초보장제도는 빈곤문제에 대한 공적 대응으로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노인빈곤은 타 계층에 비하여 그 규모와 깊이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기초보장제도를 둘러싼 정책과제 중 특히 노후소득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을 인하를 통하여 노후 빈곤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호적상의 자녀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로 인하여 실제 경제적으로는 빈곤하면서도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타 연령층에 비하여 많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 완화는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노인의 절대 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재산의 소득환산을 인하도 노인계층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재산을 활용한 노후소득 확보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노인층은 높은 주택자가소유율 등 재산보유율이 높지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노인층의 특성을 반영하여 2007년 7월부터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인 주택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집을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로 현재 주택연금의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이다. 제도가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주택연금 가입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주택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화하고 있고, 최근의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보유주택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활자금을 마련하려는 노인들이 늘고 있고, 최근 시행된 가입연령의 하향조정(65세→60세), 수시인출비율 확대(30%→50%) 초기비용 경감(농특세 면제 등)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도 지속적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노인의 인식제고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기초보장대상자는 아니지만 가구의 생활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노인은 이러한 주택연금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비수급 빈곤노인을 위한 복지형 역모기지제도의 도입 등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의 보건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만성질환과 기능저하를 경험하는 노인에게 있어 소득의 증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출 특히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소득창출을 통한 소득증대가 다른 집단에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볼 때 노인의 지출감소라는 측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일한 소득수준을 갖고 있더라도 지출이 감소할 경우 체감되는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고 경제적인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욕구는 저소득 노인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며,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서 더 클 것

으로 예견된다⁵⁾. 현재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방안의 모색과 건강보험 지급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노인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즉,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소득창출적 접근과 동시에 지출억제적 정책이 함께 수행될 때 노인의 정책체감도가 제고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노년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안정적·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 방안

안정적이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는 국민연금 도입의 역사가 짧고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연금도입의 역사가 긴 선진국의 경우 근로기간과 은퇴기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하여 연금 수급기간을 조정하고,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간의 균형 달성을 당면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공통의 과제와 더불어 갓 도입된 각종 노후소득보장제도 등의 상호연계와 역할분담의 명확화를 통한 각종 노후소득보장제도들의 정착화라는 과제를 갖고 있다.

최근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도의 제2차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대로 내고 털 받는' 구조로 변경되었고 가입기간 인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소득

대체율이 2007년의 60%에서 2028년 40%로 단계적으로 조정되었고, 서구 선진국처럼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와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이 기회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가능한 한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정되는 등 국민연금 급여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2009년 8월부터 공적연금제도간의 연계제도가 도입되어 제도의 체계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불안정이 내재해있고, 전 국민연금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의 규모가 줄지 않고 27~28% 수준을 보이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시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납부예외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데, 이를 통하여 특히 미래의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수직역연금의 경우도 내실있는 재정계산의 실시 및 그에 기초한 부담 및 급여체계의 합리적 조정, 책임준비금 적립방안의 구체화와 같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사적소득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하여 다층적 노후소득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적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나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5) 정경희 외(2009)에 의하면 기초노령수급 노인의 다수가 보건의료비에 급여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든 것을 큰 변화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현주 외(2008)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필수적인 의료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건강보조식품이나 치과진료 등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한 공적 노후소득보장과 사적소득보장제도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공적연금제도에만 의존하는 전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만으로는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 하에서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형태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추구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보완방안의 중심축인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전체 5인 이상 사업장의 10% 정도에만 도입 되고 있고, 사업장 규모가 적을수록 도입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세재보완이나 지급보장장치 도입 등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므로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의 실시, 퇴직연금 세제 보완, 공공부문의 퇴직연금 가입 유도,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의 도입, 신규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연금의 경우 2006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되는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지속적인 연금 세제정비 추진,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의 노인들이 노후빈곤으로부터 자유롭고 은퇴 전에 향유하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는 지금부터 제도적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어떠한 속도로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소, 재정 및 관리운영의 문제 해결, 제도간의 연계성 제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노후의 빈곤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과 노후에 근로기간 동안 유지했던 생활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두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령화 및 가족관계의 변화 등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성격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노년기에 경험하게 될 경제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전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하겠다. **필진**